

대전관광공사 MICE 지원제도 * 기타회의의 경우, 기관 홈페이지 참고

구분	국제회의			기업회의·인센티브관광	
				기업회의	인센티브관광
지원대상	신청주체	○ 대전으로 국제회의를 유치, 개최하는 단체, 학회, 협회, 기관 또는 법인			
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협회연합(UIA) 기준 국제회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-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며,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, 외국인 40% 이상, 5개국 이상 참가, 2일 이상인 회의 ○ 국제컨벤션협회(ICCА) 기준 국제회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국을 순환하며 참가자수 50명 이상,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○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, 300명 이상(외국인 100명 이상) 참가,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-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-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, 그 중 외국인은 50명(온라인참가자 포함) 이상이며,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○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,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<p>※ 개최형태 기준: 오프라인, 하이브리드(온라인+오프라인), 온라인 ※ 참가자 인원수 기준: 오프라인참가자 100%, 온라인 참가자 80% 인정 ※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사의 중요도, 성격 등 지원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가능</p>			
지원제도	단계별	유치지원	홍보지원	개최지원	-
	지원규모 (한도)	최대 3천만 원	최대 2천만 원	최대 2억 원	
	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치제안서, PT, 홍보물, 기념품 제작 지원 - 유치 지지서한 / 메시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전광역시, 대전관광공사 사장 - 관계자 사전방한(대전답사) 항공, 숙박, 차량, 관광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인 이하, 이코노미석, 스탠다드룸(※ 항공좌석은 협의 가능) - 유치결정 회의 or 이에 준하는 회의 참가경비 (2인 이하) - 연회비,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비 등 <p>※ 코로나19추가지원 · 온라인 유치 지원 - 유치제안서, PT 등 - 지지서한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물, 기념품 제작 -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(대전주최 연회 등) * 홍보단 개별 식사비용 지원불가 - 전차대회(또는 유관회의) 홍보부스 설치·운영비 - 전차대회(또는 유관회의) 참가경비 1인 * 1회에 한함, 공사규정에 따름 <p>※ 코로나19추가지원 · 온라인 사전홍보 지원 · 온라인 홍보물 제작 등 · 온라인 홍보부스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물, 기념품 제작(대전지역 업체 이용에 한함) - 행사장 임차료(컨벤션센터, 호텔 등) - 공식 연회비 및 공연(환영리셉션, 갈라디너 등) - 참가자 숙박(※ 포상관광 제외) <p>※ 코로나19추가지원 · 온라인 / 하이브리드 행사 지원 · 온라인 디지털 기술이용료 · 코로나 19 방역 지원 등</p>	-
	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 관련 제작물(홍보물, 기념품, 인쇄물 등)과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관광공사 후원 명칭 및 로고 노출 - 대전관광공사 및 대전광역시 홍보 기회 제공, 설문조사[서식 7] 등에 협조 -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필수 서류 제출 -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계획대비 행사 개최 결과 또는 유치 홍보활동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또는 축소 가능 - 참가자 명단 허위 및 중복 제출, 지출증빙서류의 위조가 적발될 경우 환수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 - 대전광역시 유치·홍보·개최를 위한 지원금 수령 후, 개최도시를 변경할 경우 환수조치 			
신청방법	신청시기	○ 연중 접수(수시신청) (※ 최소 행사개최 1개월 전)			
	지원절차	○ 지원신청 > 내부심사 >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안내 > 행사개최 > 결과보고서 제출 > 결과평가 > 지원금 지급			
	신청방법	○ “공문”으로 신청서 제출			
문의처	○ 대전관광공사 MICE부로팀 정한나 과장 [전화 : 042-250-1321 / 이메일 : na@daejeontoursim.com]				